

#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2. 10(월)  
건설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4. 1. .
- 나. 제안자 : 이 한 구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4. 2. .
- 라. 상정일자 : 2014. 2. 10.(제213회 임시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이 한 구 의원
  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
  - 질의 및 토론
  - 월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 - 사회적 공감감이 확보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 구성·운영 반영
- 나. 주요골자
  -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 함(안 제6조제1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도시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, 주민, 학생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의 미래상과 전략과제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,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다만, 시민계획단의 구성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율을 제고 할 수 있는 관심사항 발굴과 시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한 참여범위 설정 등 운영의 내실성 확보가 필요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시민계획단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? (이재호 의원)  
⇒ 상위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므로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.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.
- 시민계획단 운영을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...(정수영 의원)  
⇒ 시에서도 적극 추진할 생각이므로 의원님들께서 강제조항으로 수정하신다면 그에 따르겠음.

#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도형, 이재병, 김병철, 정수영, 이재호, 전원기, 전용철 의원  
나. 반 대 : 없 음.

#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7, 찬성 : 7명)

## 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 끝.

##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의견청취 및 공청회)”를 “(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 경우 사회적 공감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있으며, 이 경우 사회적 공감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